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21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3. 25. ~ 2022. 4. 8.(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석광만	1966.07.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001	31,860,000	대구 북구 내곡로
2	성대엽	1971.05.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830	31,860,000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 2 로
3	정승우	1962.01.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658	13,381,200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방산길
4	허동철	1962.09.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04	47,790,000	대구 북구 침산남로 46 길
5	김정걸	1977.08.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16	12,744,000	경북 영덕군 축산면 영덕대계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